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전용기·전재수·이동주

임종성 · 김정호 · 송갑석

이원택 • 고영인 • 박용진

신정훈·강선우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-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, 실습,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 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.

지난 5월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,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학생 2만여 명 중 99%가 넘는 응답자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음.

이에 코로나-19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

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1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4(재난에 따른 등록금에 관한 특례) ① 학교의 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, 감액 또는 환급의 비율은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정한다.
  -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였을 경우학생 전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납부 등록금 환급에 관한 특례)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시행 전에 납부된 등록금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의4(재난에 따른 등록금에
	관한 특례) ① 학교의 장은
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	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
	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
	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
	을 면제하거나 감액 또는 환급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
	제, 감액 또는 환급의 비율은
	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	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
	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였
	을 경우 학생 전원에게 지체
	없이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.